

- 양 천 구 의 회
- 제283회 임 시 회

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1. 1. 28.

의회운영위원회

의안 검토보고

의안번호	제2497호	검토	전문위원 이주현
의안명	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발의자	정택진 의원 (찬성 14명)	발의일자	2020. 9. 7.
소관위원회	의회운영위원회	회부일자	2020. 10. 7.

1

제안이유

양천구 출자·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분장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.

2

주요내용

-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복지건설위원회에 분장함 (안 제3조제2항제3호마목).

3

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, 제62조
-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관련부서 검토의견 : 없음.

라. 기타

- 1) 개정안 : 별 첨
- 2) 입법예고 : 2020. 9. 11. ~ 2020. 9. 15.

4

검토의견

□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‘양천사랑복지재단에 속하는 사항’을 삽입하려는 것임.
- 양천사랑복지재단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, 2005년 3월 조례 공포, 같은 해 11월 보건복지부의 설립허가, 12월 설립 등기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.
- 양천사랑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(이하

“양천구”라 함)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음.

- 이와 같이 양천구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, 양천구의회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례상에 양천사랑복지재단을 감시·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양천구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시·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음.

□ 법적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1항에 따르면,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위원회에 관하여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.
- 한편, 「지방자치법」 제58조에 따르면,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안건이나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고 되어 있음.
- 따라서,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추가 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지점이 없다고 사료됨.

□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양천구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소관 업무를 직접적으로 감시·감독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.

【붙임 1】 관련 법령

「지방자치법」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58조(위원회의 권한)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.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양천구(이하 “양천구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